

의안 번호	제3720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11월 17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12월 0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12월 15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12월 15일

2. 제안이유

- 김포시민에게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 동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및 제2조)
- 통행료 지원 및 지원 대상 (안 제3조 및 제4조)
- 지원 기준 및 환수 (안 제5조 및 제6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은 국비 용역값 결과에 따라 김포시 예산이 증액할 수 있다는 점과 지원 대상, 지원 방법, 지원 절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.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**수정안 1부**

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3720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5. 12. 15.
제출자 유매희 의원 외 13명

1. 수정이유

-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 조건을 변경하여 추후 상황에 따라 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 조건 일부 삭제 (안 제4조)

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지원 대상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사업용(영업용 포함) 및 입차차량</u></p>	<p>제4조(지원 대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